

公衆衛生增進을 위한 專門技術人力の 現況과 活用方案

李 鎔 成 會長
〔(社)大韓衛生士協會〕

I. 건강과 국가의 책무

일반 대중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즉 공중보건에 정부가 관련해야 한다는 이유로서, 많은 공중보건활동들은 집단이나 지역사회 행동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기계화되고 공업화된 도시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다. 위생적인 상수공급체계와 하수처리시설, 격리와 검역규정이란지, 많은 공중보건 활동들은 정부기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생정기록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역사회인간과 그 환경 사이의 모든 생태학적 관계를 구명하고 관리하는 공중보건분야의 활동들은 조직이 잘 짜여지고 유자격 직원을 두고 안정되고 영속적인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보면, 보건봉사의 내용 및 규범과 전국민의 보호를 결정짓는 공중보건관계법률을 입법시키고 집행하며, 또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야말로 가장 중요한 조직체이고 유일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보건을 위한 이러한 기능을 정부의 보건기관 스스로는 수행할 수 없으며,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 조직, 각종 직업 및 지역사회집단이 다같이 상호 협력하여야만 한다.

또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주제로 하는 위생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간의 생체적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이화학적 환경요인 모두를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고, 아울러 일상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들도 연구영역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건강의 기본이 되는 공중보건분야의 활동은 세계의 선진공업국들로부터 시도되어 오늘에 와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공중보건의 발전과 그 배경에 대한 세계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우리나라와 동시에 개최하게 되는 이웃 日本國의 공중위생행정의 정의에서 더욱 확인되고 있다.

日本國 헌법 제2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며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모든 생활면에 대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 향상 및 그 증진에 힘써야 한다.」에 기초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행정을 위생행정이라고 한다.

II. 전문직으로서의 공중보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들에서 공중보건업무는 새로운 독립된 전문직종으로 발전하여왔고 이미 발전되었다. 옛날에 의학이 성직자로부터 분리되어 나온바와 같이 공중보건도 의학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역사회보건(community medicine)분야로 자리를 잡았으며 공중보건봉사는 전문영역으로서의 하나의 독립된 주체이다. 흔히 의사로서 보건관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교육만으로는 보건관이 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

중보건의사업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능력과 기능이 요구되고 공공책임과 사회적 책임 및 봉사가 다같이 혼합되어 있다. 또한 상이한 많은 종류의 전문요원활동이 요청된다. 동일조직 내에서도 의사, 간호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각 직종별 의료기사, 영양사 등 각기 고유한 전문적인 영역과 자존심 및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개 공중보건의사업의 결과 얻어지는 산물은 모호한 불가시적인 것이고 그 소비자는 각기 상이한 종류와 정도의 개별적 필요와 자존심과 편견 및 이성을 가진 여러종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영속적이고 찬연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 영국의 위생개혁에서 엿볼 수 있다.

만약, 다른 분야에 종사했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더 많은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아주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을 흔연히 공중보건운동에 투신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들의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업에 대한 놀랄 만한 정열이다. 무엇이 이렇게도 그들을 공중보건운동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열렬한 지지자로 만드는 것일까 묻게 된다. 유독 이 분야에서만 느끼고 의욕을 일으키는 매력 같은 것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마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 활동의 어느 분야보다도 공중보건활동 중에는 전문적, 경제적, 예술적인 면에서 인간이 최초로 여러 창조물과 자연 환경에 복종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적응시켜 활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 것 같다. (허 정<역자>, 존 J. 핸론, 보건행정의 제 원리, 문교부, 1973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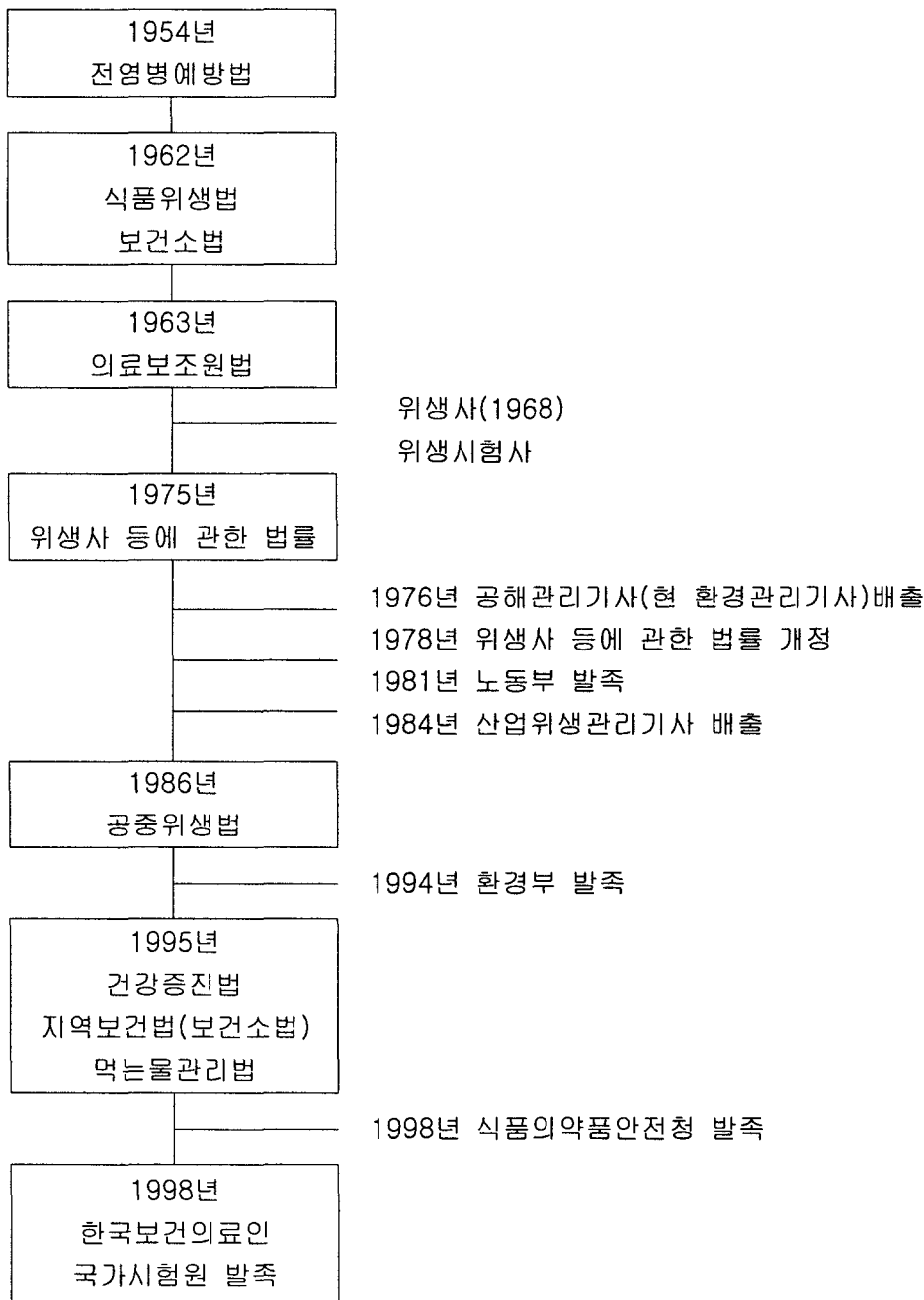
III. 위생사 · 위생시험사 제도의 배경과 현황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위생업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이다.

"위생사 등"의 제도가 의료보조원법('63년 제정)으로 시작되어 동 "위생사 등"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염병예방법('54년 제정), 식품위생법 및 보건소법('62년 제정)의 제정 시행과 병행하여 1968년부터 "위생사 등"(위생사·위생시험사) 보건인력이 국가시험을 거쳐 배출되었으며, 동 "위생사 등"의 업무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치료의학분야와는 달리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이므로 의료보조원법에서 개별법인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1975. 12. 31(법률 제 2859호)로 입법 제정공포 되면서 발전의 모습을 보였으나, 이어 '76년 공해관리기사(현, 환경관리기사)제도 실시, '84년 산업위생관리기사제도 실시로 그간 "위생사 등"의 업무분야 중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관리 업무와 산업위생 관리업무가 제외되었고, 공중위생법('86년 제정), 건강증진법('95년 제정), 지역보건법('95년), 먹는물관리법('95년) 및 '98년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청) 발족 등 위생사 등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보건위생관련 법규가 신설 제정 시행되었고 관련 청의 신설

등 그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이러한 위생관련법규의 목적수행을 위한 "위생사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효율적 인력 배치에 관한 제고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생사 등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생관계 법규 및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의 능동적이고 효율성 있는 제도적 노력이 미치지 못하여 왔다.

그림 1. 위생관련 법규 및 기술인력



또한, 위생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위생학 교실이 '63년에 창설되어 오늘에는 전국에 위생사 등을 배출하는 보건대학이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등 10개 대학으로 매년 국가시험응시자가 3,000명에 이르고 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 면허 취득자는 '94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이며, 지난 '98년 1월에는 1,752명이 합격되어 전국 면허자는 17,000명을 넘고 있다. 따라서 위생사 등의 면허자가 국가 보건정책에 따른 관련행정기관의 보건이론에 기초한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관리에 의해 막대한 교육투자로 양성되어 배출되고 있으나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소홀히 하는데서 우수 보건인력의 인적 재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큰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 면허등록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연 도	누 계	위생사	위생시험사
1980	1,217	1,045	172
1985	3,645	3,449	196
1990	7,771	7,571	200
1992	9,349	9,147	202
1993	10,252	10,050	202
1994	11,433	11,228	205
1995	12,568	12,363	205
1996	13,783	13,576	207
1997	15,292	15,084	208
1998	17,044	16,836	208

표 2. 보건소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 원	
	계	
	11,804	100.00
보건소장 의 무 직	110	0.93
보 건 직	134	1.14
의 사 관리의사	322	2.73
공중보건의	275	2.33
치과의사 관리의사	51	0.43
공중보건의	113	0.96
약 사	216	1.83
의료기사 방사선사	427	3.62
임상병리사	661	5.60
치과위생사	424	3.59
간 호 직 진 료 실	662	5.61
결핵관리	287	2.43
모자보건	543	4.60
가족계획	515	4.36
나 관 리	23	0.19
기 타	882	7.47
보건직	2,463	20.86
행정직	687	5.82
고용원 및 기타	3,009	25.49

※ '96년도 보건복지부통계

표 3. 위생사 등의 보건직 종사 현황

구분		보건소	교육청	위생과	보건과 보건행정과	환경위생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기타
	393	106	88	84	17	25	36	37
서울	59	5	20	10	7		14	3
부산	60	13		28	2	13	4	
대구	42	12		18	1		3	8
인천								
광주	2		2					
대전								
경기								
강원	4		4					
충북	110	39	21	11	7	8	8	16
충남	10		10					
전북	14		7				7	
전남	2		2					
경북								
경남	85	37	17	17		4		10
제주	5		5					

※ '97. 1. 21 (사)대한위생사협회가 전국 관련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 발송 및 회신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임.

공중보건분야의 전문기술인력으로서의 "위생사 등"의 면허등록자가 '98년 현재 17,044명에 이르고 있음<표1>에도, <표2>의 지역보건소 전국 보건직 종사인원 2,463명중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위생사 등의 종사인원은 106명으로 전국 보건소 보건직 종사인원에 비하여 4.3%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고 나갈 어린씩들이 자라고 있는 학교보건분야에 상당수의 위생사가 배치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가 「위생업무」를 "인체의 발육과 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업무"로 정의하면서, 동 위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위생사·위생시험사로 하여 그 권리를 동 법 제 4조에 의거 국가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 제 8조는 위생사 등이 아니면 위생업무를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생사·위생시험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까지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 법 제 14조는 위생사 등이 아닌자가 위생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생업무와 관련한 위생관계법규(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등)에는 동 업무의 수행자격을 위생사 등이 아닌 의사, 약사, 수의사, 식품제조기사, 식품가공기사, 영양사 뿐만 아니라 농화학·생화학과 등 위생업무와 무관하거나 해당업소의 생산제조 과정에 당연히 종사하여야 할 자들에게 위생업무를 부여하여 동 업무의 정의와 목적수행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표 4. 위생사·위생시험사 법적 업무분야

위생관계법규 및 위생업무	법 조항	자격구분	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생용품제조업 2. 신고대상장난감 (모조 젓꼭지) 3. 공중이용시설 4. 공중위생감시원 위생검사기관의 인력기준 5.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제19조, 영17조 제19조, 영 17조 제26조, 영19조 의 2 제35조, 영24조 제31조의 2, 규칙49조의 2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사·위생시험사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감시원 2. 식품위생관리인 	제20조, 영5조 제28조, 영16조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사·위생시험사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예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독관리인 2. 방역관, 방역사, 방역원 	제40조의 5 영11조의 3 제44조, 영12조	위생사	보건복지부 위생시험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위생사·위생시험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건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전문인력 배치기준 		위생사	보건복지부 위생사·위생시험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관리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먹는물 수질 감시원 2. 먹는생물제조업 수처리제조업 정수기제조업의 품질관리인 3. 먹는물 검사기관 인력기준 	제6조, 영2조 제23조, 영7조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사·위생시험사 위생시험사	환경부

표 5. 공중위생법상 위생감시원 및 위생관리인 자격과 업무

<p>○ 위생감시원 및 위생관리인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생사·위생시험사·환경(수질)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자 2. 대학에서 의학·수의학·약학·화학·화학공학·위생학·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화학·화학공학·위생학·위생공학 또는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p>○ 위생용품제조업의 위생관리인의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 및 제품의 검사 2.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의 검사 3. 생산 및 품지관리일지의 작성·비치 4.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
<p>○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인의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생관리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준수의 확인 및 지도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소독이행의 확인 및 지도 4. 관계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의 확인 및 지도

표 6. 식품위생법상 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p>○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위생사·위생시험사·식품제조기사·수산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5. 5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p>위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p>
<p>○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7. 식품위생관리인·조리사·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 등의 압류·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 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표 7.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 및 업무

<p>○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첨가물제조업 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수산가공학(수산물을 원료로 한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2. 식품제조·가공업 중 유가공품 및 식육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만,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 또는 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3. 식품제조·가공업 중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식품공학·식품화학·농화학·화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거나 식품제조기사·영양사 또는 품질관리기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p>○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검사 및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2.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기준 및 규격검사 3. 표시기준 및 광고의 적합여부 확인 4.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처리 5.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비치 6.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7.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표 8. 전염병예방법상의 소독관리인의 자격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생물학과·화학·농학과·농생물학과·생물공학과·미생물학과·화학공학과·환경공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의사·약사·수의사 또는 위생사의 면허증 소지자
3. 보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염병관리법상의 <표5>, <표6>의 직무내용은 위생관리업무로서 동 업무분야는 예방의학, 지역사회의학기술분야이며 지역사회 전반의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모든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직무이므로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관련 학문의 포괄적인 지식과 기술의 필요와 그리고 인격을 갖춘 직무상의 자질까지도 요구된다.

위의 위생관련법상의 <표5>, <표6>, <표7>, <표8>은 위생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에 대한 자격규정으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가공학·화학 등의 비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졸이상으로 유관기관에서 일정기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2주 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 등으로 위생업무와 관련한 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관리인의 경우, 대학에서 식품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화학공학·수산가공학·축산가공학 등을 이수한 자, 식품제조기사, 영양사 등의 직종은 생산제조 과정에서 당연히 종사하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위생관리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위생관리의 책임을 업자에게 귀속시켜온 것으로 관련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위생업무와 관련하여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검정과정을 거친 직업상 특정업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자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한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1986년 영국의 국가직업자격위원회(NCVQ :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자격인 전문직업자격(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개발함으로써 자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였고, 이 개혁작업의 필요성은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습성과 및 지식과 기능을 적절하게 인정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한 자료에서,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유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그 경력을 인정하여 검정과정을 면제하거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취득방법상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P iv, 성림문화, 1998. 8)

국가자격(면허)은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 및 질서와 관련하여 국가가 개인의 직업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해준 결과이며, 직업상 특정업무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자격으로서 의료법상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전문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직종별 의료기사, 약사법상의 약사, 한약사 등, 식품위생법상의 영양사 등을 "예"로 들수 있고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직종에서 각 직종별 전공학과를 이수하지 않고서는 국가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위생관련업무에 1~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양질의 보건인력 확보에 역행하고 있으며, 동 법이 목적하는 우수한 전문보건인력 확보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표9>

(예)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양사의 면허)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표 9.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응시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또한, 자격(면허)이 국가의 인적자원을 평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국가는 자격제도가 일정한 질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즉, 국가는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부여하고 그 직무상의 권리와 공신력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격부여 후의 사후관리 따른 질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직무와 관련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국가자격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정표 등의 연구조사 결과에서 법령

에 정하고 있는 보수교육이 자격소지자의 질 향상을 위해 조사대상자 중 61.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수교육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보수교육 내용의 부실함이 37.4%, 보수교육 방법의 부적절이 29.9%, 시설·설비의 빈약함이 11.8%, 강사진의 부적절함이 2.8%의 순이 었다. 그리고 보수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신기술 및 정보 75.1%, 실무능력 20.8%, 자격제도변화에 관한 사항이 2.4%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 식품위생법 제40조 동 시행규칙 제50조는 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환경 관리인 및 기술 관리인 등은 3년마다 1회 이상(교육기간 : 14일)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보수교육 필요성

단위 : 명(%)

구 분	빈 도
예	331(61.1)
아니오	211(38.9)
계	542(100.0)

표 11. 보수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빈 도
보수교육 내용이 부실함	79(37.4)
보수교육 방법이 부적절함	63(29.9)
시설·설비의 빈약함	25(11.8)
강사진이 부적절함	6(2.8)
기타	38(18.0)
계	211(100.0)

표 12. 보수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단위 : 명(%)

구 분	빈 도
신기술 및 정보	417(75.1)
실무능력	113(20.8)
자격제도의 변화에 관한 사항	13(2.4)
기타	9(1.7)
계	542(100.0)

오늘날 국가책임의 공중보건사업의 발전과 확장을 해치는 요인은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부적절한 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중보건사업은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비하여 특유한 요원문제를 가지고 공공책임과 사회적 책임 및 봉사가 다같이 혼합된다. 그리고 동 사업활동의 결과는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그 지역사회의 건강지표에서 평가될 뿐이다. 그러한 "예"로서 예방가능한 질병인 소화기계전염병 발생 등으로 나타난다.<표13>

표 13. 1종 전염병 환자 연도별 발생 현황

구분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 열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90							232							13		
91	113						187							34		
92							221							245		
93							307		32					113		
94							267		8					233		
95	68						370		30					23		
96	2						475		9					9		
97	10						265		9					11		
98							307							249		

IV. 위생사 등의 활용방안

위생사·위생시험사 제도의 현황에서 "위생사 등"의 위생업무는 건강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생사 등"」의 제도 실시 이후 변화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생사 등"」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생업무의 직무수행 범위를 명확히하고, 현실적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을 위생업무 범위에 신설, 규정할 것을 제시한다.

1.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생업무

- 1)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신설)
'86년 제정된 공중위생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위생관리업무를 이법에 명시하고자 함
- 2) 먹는물,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먹는물관리법의 신설로 "음료수"라는 명칭이 없어졌으며, 수도법에 의하여 위생사가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수질관리업무를 명시함.
- 3)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및 위생관리
폐기물처리분야가 폐기물환경기사의 업무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근래에 늘어난 종합병원 급의 적출물 등(감염성폐기물)의 처리가 배출단계에서 종말처리까지 안전한 위생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리를 교육과정에서 역학 및 전염병관리학 소독학 등을 이수한 위생사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저한 관리가 시급함.
-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와 가공 및 판매 등의 위생관리
위생사의 고유업무로서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와 가공 등"의 위생관리 외에 '8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난 대형 식품유통·판매과정에서 적정온도의 유지보존, 식품의 유효기간, 부정식품 등의 위생관리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TV보도 등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어 이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 연쇄점, 슈퍼마켓 등에 식품위생관리인으로 "위생사"를 두어 판매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를 하도록 함.(식품위생법 제28조에 "판매과정의 위생관리"제도의 신설)
- 5) 유해해충 및 쥐의 구제
- 6) 기타 환경인자와 관련되어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동 시행령 제2조(위생업무) 현행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방역업무와 지역보건관리업무"로 한다

2. 동 시행규칙 중 업무범위의 신설 및 개정

• 동 시행규칙 제 2조(위생사 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 법 제 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는 삭제하고 개정한다.

1.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상시 사용근로자 100인 이상 영업에 있어서 위생관리업무 및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의 판매과정의 위생관리(개정신설)

2.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 2규정 - 소독대행자 업무

3. 상시 사용근로자 3,0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자 보건관리(현행) ⇒폐지
3,000인 이상의 생활집합체(요양시설, 군병영, 집단 등)의 보건관리(개정)

• 개정(신설) 업무범위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검사·판정 및 감시업무, 먹는생물제조업 또는 수처리제조업의 품질관리 및 자가품질검사업무

5.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감염성폐기물) 및 세탁물의 위생적처리 업무

6.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 위생용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업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담당자 업무 및 위생관리상태 정밀검사업무

7.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 및 방역관리업무

8.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보건, 위생지도, 보건통계업무

9.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와 환경위생관리업무

10.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위생관리업무, 식품위생감시업무,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의 신선도관리업무 및 식품의 품질검사업무

3. 위생사의 면허자수가 현재 17,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에도 1,700명 이상이 합격하여 위생사의 사회 수요에 비하여 엄청난 과잉공급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전국의 11개 위행관련학과의 입학정원은 1,323명에 이르며 일부 4년제대학(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환경보건과)의 졸업자와 위생관련 비전공자의 무분별한 응시로서 효율적인 위생사의 수요공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예"로서 전국 보건소 보건직 종사인원 2,463명 중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위생사 등이 106명으로 4.3%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보건법상의 위생 및 보건관리업무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본 업무로서 위생사의 우선 배치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또한 공중위생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의 직무는 위생사의 고유업무로 보장되어야 한다.

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

나.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다.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의 인력기준

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관리인의 자격

마. 신고대상 장난감제조 위생관리인

전염병예방방법상의 방역 및 소독업무의 자격을 위생사만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위생사가 공중위생법상의 공중위생업무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관리업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관리업무, 지역보건법상의 보건관리업무, 학교보건법상의 학교보건관리업무, 먹는물관리법상의 수질관리업무 등 모든 분야의 위생관리업무 수행은 직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위생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책으로 위생사를 공중위생사와 식품위생사로 전문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 공중위생사 - 공중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먹는물관리법, 학교보건법상의 위생관리업무로 전문화 한다.
- 식품위생사 -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업무로 전문화 한다.

※ 지역보건법에 의한 위생지도 및 보건관리업무는 전문 직종별로 공중위생사와 식품위생사가 각기 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5. 공중보건사업 활동지원, 공중위생 의식 계몽, 위생사 등의 자질향상과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96. 6.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 설립 허가된 사단법인 대한위생사협회를 동 법에 명시하여 관련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수행토록 함.

V. 결 어

2002년 월드컵대회를 日本國과 같이 개최하게 된다. 올림픽 개최와 같이 세계인들의 시선이 한국가가 아닌 두개의 국가에 집중되고 본 대회의 경기장면만이 아닌 사회생활환경부분까지 속속들이 세계에 노출되면서 비교되는 것이다. 日本國은 위생문화가 세계 제일이라는 점에서 속고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가 우리의 생활위생문화를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자연생태계에서 소비자 지위의 일련의 인간집단일 뿐이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질병성립에 관여하는 전파환을 모든 보건과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학기술에 의한 기본업무가 바로 위생업무이며 동 업무의 지속적이고 능률적인 실천은 양질의 생활환경수준과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동 업무와 관련한 위생관련법규를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새롭게 바로 세워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고, 더불어 제2의 건국 정책과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위생업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동 법의 입법취지이고, 동 업무의 효율적 수행 여·부는 국민건강 증진에 미치는 바가 지대하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실시이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생사 등의 전문성을 고려한 관련 위생관계법규 및 동 법률에 규정된 위생업무분야의 인력배치에 대한 관련 당국의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공중위생과 관련된 전국 보건대학의 학과수는 11개로서 입학정원이 1,300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0개 이상의 보건대학에서 전공학생이 수백명씩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또한 196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위생사 국가면허소지자는 17,000여명이 넘고 있다.

공중위생법이 완화될 경우 전국의 위생관련 대학의 학과 졸업생과 기존의 위생사를 포함하고 급전문기술인력의 사회 진출이 크게 제한되어 전문기술인재의 사장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며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동 법이 '75년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이래 변화된 지역사회 건강증진욕구에 부합하도록, 동 법 제정시행이 후의 새로이 제정시행된 위생관계법규상의 위생업무를 동 법에 명시하고 각 관련 위생법규의 개정·폐지 또는 신설된 법 조항과 일치되게 하여 위생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가보건정책에 부합하도록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현재와 미래에 부응하는 양질의 전문보건인력확보를 위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위생사 응시자격을 동 위생업무와 관련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위의 대학 및 학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며, 면허취득 후의 국가기술자격자의 사후관리의 필요와 중요성에 따른 위생사면허자의 신기술 및 정보의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 법이 규정하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 설립된 (사)대한위생사협회를 동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중위생의 확보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과 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행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확고한 정설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공중위생행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에서의 행정체계가 변화하는 동안 공중위생에 관한 중요성이 행정부내에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그 결과 공중위생법상에 명시되고 있는 공중위생부분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공중위생부분이 부실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더욱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업종의 자율화라는 명분아래 공중위생법상의 제반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려는 분위기에 접하면서 정부에서 공중위생분야의 수행업

무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일반 개인업소의 자율로 맡기려는 제도의 개혁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믿으며 아직까지는 공중위생의 증진은 정부주도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넷째, 신규업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하고 업자의 자유로운 영업을 하기위하여 공중위생법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으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국민건강을 위한 하나의 보호 틀을 완전하게 허물어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일부에서 맹독성 농약을 방역용 살충제로 쓴다거나, 보고되지 않은 식중독 한자가 상상외로 많다는 사실, 일반 대중목욕장의 욕수에서 대장균이 상당수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 그리고 대형건물 냉각수에서의 레지오넬라균 검출과 대형빌딩내 근무자의 빌딩증후군 환자의 증가 등 예방가능한 수인성 전염병의 지속적 발생, 소비자가 섭취한 후에 보도되는 부정·불량식품, 감염성 의료폐기물의 불법매립·투기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공중위생법상에서의 위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여야할 것이다.

공중위생분야의 향상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로서 국가백년대계의 측면에서 공중위생법의 완화와 축소에 앞서 기존법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에 정부와 학계 그리고 일반단체의 총체적인 힘을 집중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공중위생의 분야는 더욱 정부에서 강력한 지도와 계도 그리고 관리를 시행하여야할 것이며 정부의 행정력 범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경우 부작용으로 파생되어 지는 문제를 또다시 정부가 안게 되는 비경제적이고 소모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복지국가의 행정적 최종목표는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하고 추구하는데 있다.